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에도 불구하고”을 “제2조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6조의3의 규정은”을 “제26조의3의 규정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제1항제1호가목, 제51조제2항제1호, <별표 2-4>, <별표 2-8> 및 <별표 2-9>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을 “제50조제1항제1호, 제51조제2항제1호, <별표 2-4> 및 <별표 2-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적용함에 있어”를 “적용함에 있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6호 중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영업개시일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019년 1월 1일부터”를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로 한다.

제10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13 제1호 중 “2019년 이전”을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로 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를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로 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를 “영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로 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를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로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를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로 한다.

별표 2-13 제2호가목 중 “2019년 이전”을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20년 1월 1일 이후”를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2021년 1월 1일 이후”를 “영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022년 1월 1일 이후”를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2023년 1월 1일 이후”를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40호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2조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① (생략)</p> <p>1. 제2조에도 불구하고 <u>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1조의2에 따른 자기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u></p> <p>2. 제26조제4항, 제26조의2 및 <u>제26조의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3. 제10조제1항, 제14조의5, 제26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제45조제2항, <u>제50조제1항제1호가목, 제51조제2항제1호, <별표 2-4>, <별표 2-8> 및 <별표 2-9>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총자본비율" 대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고, "보통주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 관련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4.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u>적용함에 있어 "보통주자본 및 기타기본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 대신 "기본자본"을 적용한다.</u></p>	<p>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1. 제2조에도 불구하고 <u>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u> ----- ----- ----- -----.</p> <p>2. ----- <u>제26조의3의 규정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u> -----.</p> <p>3. ----- ----- ----- ----- <u>제50조제1항제1호, 제51조제2항제1호, <별표 2-4> 및 <별표 2-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u> ----- ----- ----- -----.</p> <p>4. ----- <u>적용함에 있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u> -----.</p>

5. (생략)

6. (생략)

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

2월 31일까지 : 100분의 70 이

상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

2월 31일까지 : 100분의 80 이

상

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

2월 31일까지 : 100분의 90 이

상

라. 2019년 1월 1일부터 : 100분

의 100 이상

7.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삭제>

나. 영업개시일을 포함하는 회계

연도 -----

다.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라.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

터 -----

7. (현행과 같음)

8.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의 말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